

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8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5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·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
(이동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.

발 의 자 : 이동한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훈미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사업 (안 제4조 ~ 제5조)

3. 관련법령

- 해당없음

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동차정비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.
2. “자동차정비 사업자”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종사자”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

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는 군포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·정비,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
3.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
4.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